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

① 필수서류 수령 및 적합한 서비스 상담

장기요양 인정서, 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 후 적합한 서비스 상담

② 급여계약하기 :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급여·비급여 내용, 계약기간, 본인부담 비용 등

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·승인 후 계약

③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: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및 동의,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

④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: 본인부담율에 따라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에 납부



2.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

가. 수급자와 사랑뜰방문요양센터(장기요양기관)는

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.

- ① **계약 당사자:** 수급자(또는 보호자), 사랑뜰방문요양센터
- ② **계약기간:** 등급인정서에 기재된 기간, 당사자 간 협의 결정
- ③ **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등:** 방문요양, 방문목욕 등
- ④ **항목별 비용:** 당해 연도 수가를 기준으로 명시

나. 계약체결 시 장기요양기관은

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.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3. 이용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

가. 장기요양기관의 확인 사항

-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

나. 수급자(보호자) 동의 사항

-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